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11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37호(2009.12.24.)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천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■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일 : 2022.02.10.

다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: 2022.02.11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12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37호(2009.12.24.)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천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공공재개발
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마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2번지 일원

바. 정비구역의 면적 : 12,272.5m²

사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: 2022.02. (사업시행자 지정일)

아.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27.01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13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-5612, '22. 2. 4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적용기간: '22. 02. 07.(월) 0시 ~ '22. 02. 20.(일) 24시

2. 대 상: 서울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
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- (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) 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집합제한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○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

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

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
○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○ 경과규정

-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2.21.(월) 05시까지 적용

5. 업종별 방역수칙

① 목욕장업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)

★ 추가 적용 수칙
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○ (이용자)

- 운영시간 제한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-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-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원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 등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○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※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	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